

보도일시	이 자료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보도 가능합니다.		
배포일시	2019. 10. 31.(목)	미디어담당관실	02-788-3117
담당부서	국회사무처	담당과장	예승우 (02-788-2346)
	의사국 의안과	담당자	사무관 김수진 (02-788-2359)
	국회사무처	담당과장	유항재 (02-788-3299)
	미디어담당관실	담당자	사무관 구희재 (02-788-3117)

국회 본회의, 민생법률·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

- “국민관심법안”, “생활밀착형 민생법안” 등 164건 법률안 의결
- 문희상 의장, “여야 합의로 민생안건 처리 다행,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” 당부

국회는 10월 31일(목) 열린 제371회국회(정기회)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,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.

《 제371회국회(정기회) 제10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》

2019. 10. 31.

구분	법률안	결산 등	기타 (위문금 각출의 건)	합계
건수	164	3	1	168

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, 군공항 소음 보상·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“P2P금융법”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다.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·“과잉관광(Overtourism)” 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·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 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되어있다.

문희상 국회의장은 “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

되었지만,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전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” 고 평가하며, “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.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” 고 밝혔다.

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1>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,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“국민관심법안” 본회의 통과

- ①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」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피해보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. 제정법은 ▲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▲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▲일정범위 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▲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 법이 시행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.
- ②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처리되었다. 개정안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, 3학년,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.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③ 「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.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하고,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〈2〉 P2P금융법 제정, VR·AR저작권 규제완화 등 “4차산업” 관련 법률 정비

- ①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일명 “P2P금융법”)이 제정된다.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(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 2,521억원)를 보여왔으나,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.

제정법안은 ▲등록요건(최소 자기자본 5억원, 설비 등) ▲영업행위 규제(정보공시, 최고금리 등) ▲투자자 보호(대출·투자한도 설정, 최고금리 규제 등)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- ② 「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가상(VR)·증강현실(AR)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가상·증강현실 기술 활용 과정에서 **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**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〈3〉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, 보건소 난임시술 등 “생활밀착형 민생법안” 처리

- ①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 개정안은 특히 **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다**는 점을 감안,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②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‘난임의 예방 및 관리’ 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는 난임 주사 시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「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도 통과되었다. 지역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“과잉관광(Overtourism)” 완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되었다.

「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시·도지사나 시·군·구청장이관광객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‘특별관리지역’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 이를 통해 관광지역 주민들의 생활피해나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,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·임차를 위한 대출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.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.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및 주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.

④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하도급업체 보호 등 “사회부조리 해소를 위한 법안” 처리

①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.

「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지방공기업, 출연·출자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,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·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고, 수사·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. 한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이루어졌다.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,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,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금체불,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문제에 대한 대책으로,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.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의료인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.

<5>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

-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, 1,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.
-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, 정부 소속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,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시배정 등으로 집행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.
- 부대의견 주요 내용으로는, 다년도의 성과를 고려한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, 출연금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교부 하도록 노력할 것,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 등이 채택되었다.
-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“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” 등 4건의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.

연 번	감사요구안 내용
1	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
2	국방부의 공공요금, 군 소음소송 배상금,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등 예산의 이·전용 및 조정 과다에 대한 감사
3	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등 예산 이·전용에 대한 감사
4	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

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.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(likms.assembly.go.kr) 의 “최근 본회의 처리의안” 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【붙임】

-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 내용
- 제371회국회(정기회) 제10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